1 예정가격 결정 업무 소홀

□ 관련규정

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예정가격의 작성)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0조(예정가격의 결정기준),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5조(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)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계약수량·이행기간·수급상황·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기준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,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도록 규정

■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5장 제3절(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)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,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·공표한 가격, 감정가격,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상대자 외 견적가격을 폐업한 사업자의 견적서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(산출기초조사서) 작성

사례2> 풍수해 대비 수방 자재 구매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폐업한 업체 명의로 발행된 견적서를 비교 견적으로 첨부하여 예정가격조서(산출기초조사서) 작성

사례3>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격이 OOO,OOO원인 프린터를 OOOO시스템과 OO개월 동안 임차료 O,OOOOOO원 납입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, 시중 가격 등과 비교하여 과다 계약금액으로 예산을 낭비

사례4> 공기청정기, 정수기 등 물품을 임대하면서 동일모델 임차료와 비교하여 최저 단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단가로 계약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○ 계약 시 비교견적 및 단가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여 합리적 예정가격 결정으로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